

20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2022년 11월 8일(화) 14시~16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대강당

202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발행인 김선태

발행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발행일 2022년 11월 8일

주 소 (04918)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전 화 02-460-7622

2022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소위원회 토론회

#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14시 ~ 16시

장소 : 주교회의 4층 대강당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참여 : 현장 참석 및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진행  
유튜브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  
<https://youtu.be/bvcQrWZwGqA>

문의 : 02)460-7622, 010-7516-1312, 010-4529-3368

사회 : 이영훈 신부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총무 /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인사 말씀

김선태 주교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발표

발표 1 | 학교 밖 청소년의 일과 노동

“생계형 알바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정현 사무국장 -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발표 2 |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익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유민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3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일자리, 인턴십 프로젝트 사례 나눔

(백승준 신부 - 살레시오수도회,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장)

## 토론과 질의응답

공통주제 토론 |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종교)의 역할  
기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마무리







# 자료집 목차

인사말씀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를 향한 우선적 관심과 실천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09
발표 1	학교 밖 청소년의 일과 노동 이정현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13
발표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민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
발표 3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자리,인턴십 프로젝트 사례 나눔 백승준 신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5



## 인사 말씀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를 향한 우선적 관심과 실천

평화를 빕니다. 이 토론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안과 밖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라는 경계선을 넘은 청소년들은 ‘문제아’라는 낙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잊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덧붙여집니다. ‘노동자’입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일찍 이루기 위해 ‘노동 현장’이라는 새로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위로와 격려보다 착취를 당합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다루기 쉬운 도구’로 취급됩니다. 인격 모독과 노동 착취,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서 그들은 공포와 불안을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전인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노동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지상의 평화, 18~19항』)가 있음을 교회는 거듭 천명하였지만, 현실에서 그들의 노동 권리는 무참히 뭉개지고 있으며,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인권을 위협받는 상황”(『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68항』)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와 연대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단순히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의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2021)』, 45항)에 맞서 그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아울러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상동, 68항)”하려는 모든 행동에 연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우선적 관심과 실천이 단지 오늘 이 토론장 안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지역교회 특히 본당 사목자와 수도자 그리고 청소년 사목에 관련한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현재”(『제34차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 강론』)인 청소년의 삶에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지지와 함께, 그들이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협력자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본당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전선 “야전병원”(프란치스코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았던 경계선 저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의 삶에 대해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과 신부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노동사목소위원회와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청소년 노동자이셨던 예수님’(마르 6,3 참조)께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 발 표 1

## 학교 밖 청소년의 일과 노동 “생계형 알바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정현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학교 밖 청소년의 일과 노동

## “생계형 알바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정현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①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위기 속 청(소)년들

- 학교 밖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 보호 종료 청소년
- 은둔형 외톨이
- 1인 가구 · 고립 청년
- 니트(NEET) 청년
- 생계형 알바 청(소)년

- 다양한 위기 환경·요인에 따른 분류와 법·제도가 혼재
- 가족제도, 사회제도에서 배제되고 고립된, 모든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본 발제는 법·제도적 용어로써의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 빈곤·위기·고립 상태에서 노동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생계형 알바”라는 시선에서 접근하고자 함

### ② 생계형 알바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 1. 생계형 알바

‘생계형 알바’는 사실 모순된 단어다. ‘생계’와 ‘알바’는 본래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의 준말로 쓰이는 ‘알바’란 일반적으로 학생(대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 용돈벌이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일시적·임시적인 노동을 뜻한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완적·선택적 노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생계형 노동’과 ‘알바’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계형 알바를 본다. 그들은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있지만 ‘알바’라고 하기에는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을 일하고 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실상의 직업노동자들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2016), ‘생계형알바 실태조사 보고서’ 서문

일하는학교가 2015년~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보완적 노동’으로서의 알바가 아닌, ‘직업·직장’으로서의 알바를 하는 ‘생계형 알바’, ‘1인 가구’ 청년들을 200명 이상 설문조사하고 20명 이상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2. 생계형 알바의 기원 - ‘생계형 알바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 1) 청년 A :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된 생계형 알바 (학교 밖 청소년)

민주(가명)는 열세 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던 엄마 아빠가 그 무렵 완전히 이혼을 했고, 건강이 나빠진 엄마는 일을 하지 못했다. 민주는 학교 준비물도 사고 친구들과 간식도 사 먹으려고 떡볶이집에서 시급 3,000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잠깐 일하고 용돈을 벌려는 생각이었지만, 이후 민주는 삶은 '끝없이, 씬 없이' 일해야 하는 '생계형 알바' 생활로 이어졌다. 엄마의 병이 깊어지고 이혼한 아빠가 몇 해째 생활비를 보내 주지 않아 민주는 고등학교 입학 두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유소, 피시방, 호프집, 제빵 공장... 민주는 몇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일을 오가며 일했다. 한동안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잠시 그만두고 쉬었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패턴을 반복했다.

### 2) 청년 B :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 (가정 밖 청소년)

B는 어려서부터 부모나 가족의 도움 없이 살아왔다. 일찍 양육을 포기한 부모들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아동기를 보냈고, 보육시설을 뛰쳐나왔다가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중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를 그만뒀다. A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적어도 A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그렇게 중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다녔지만, 순탄치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손을 놓았던 '공부'라는 것이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장을 얻는 것조차 어렵게 했고, 친구나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스무 살 무렵 고시원에 살거나, 일하며 만난 어른들 집에 얹혀 지내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자기 나름의 자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좋은 직장을 얻을 길이 없어서 편의점, 호프집, 생산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갈 길을 찾았다. 하지만 들끓는 성격 탓에 일자리를 구해도 한 달,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 3) 청년 C : ‘알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대학 비진학 청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음
- 흥미 있는 분야가 있어도, 부모/가족이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알바를 통한 돈벌이’

### ③ 생계형 알바가 경험하는 노동

#### 1. 노동환경 측면: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응하지 못함,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어려움

-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권익에 대한 청(소)년과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져 가는 추세. 객관적 노동환경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생계형 알바 청(소)년은 노동권익에 대한 정보를 알더라도 대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노동인권 교육이 권리와 정보 전달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 문제 해결에 이르기에는 부족함
- 원활한 의사소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져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불안정이 나타남

#### 2. 변화하는 알바 노동

- 비대면 시대, 택배 물류 · 배달 알바 급증
- 초단시간 노동 확대 : 하루에 세 가지 알바를 하는 경우
- 온라인 노동 : 콜센터, 온라인 스토어 홍보 등
- ☞ 일당노동, 건별 급여 방식의 불안정 노동
- ☞ 소속감 없는 노동, 책임감도 관계 형성도 없는 노동 (일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짐)

#### 3. 고착된 생계형 알바의 영향 : 교육 · 성장 기회로부터의 배제

##### ○ '정규 교육 과정'으로부터의 이탈이 의미하는 것

- '대학'과 '대학 밖'의 교육 기회, 취업 기회의 격차
- 정보 활용 역량 격차 확대 : 어릴 때부터 집에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함
- 또래 관계망에서 이탈
- 단기간 알바 노동 : 깊은 관계 형성 어려움
- 알바 노동에서의 소외 : 알바 구인 과정에서도 학력 차이 발생

### ④ 생계형 알바 / 일의 의미

생계형 알바에게 일터는 삶의 터전이다. 그들 중 다수는 학교를 떠났거나 대학에 가지 않고 일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학교 대신 일터가 있었다.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성장했다.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얻고 성취를 경험한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일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일해야 내가 살아있고 커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터에서 생애 처음으로 사회를 만나고, 성취를 경험하고, 좋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강점과 길을 발견해온 사람들이다.

- 생계형 알바 노동을 ‘고되고 힘든’,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가 횡행하는’ 부당하거나 불행하거나 불운한 경험으로 보는 시선의 문제
- 학교가 아닌, 일을 통해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것들
- **‘알바를 통한 성취 경험’, ‘성장과 변화’, ‘또 하나의 사회생활 방식’의 측면에 주목해야 함**
- 기존의 사회제도, 사회 인식은 ‘알바’를 보완적·경과적 노동으로 인식하여 생계형 알바를 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1.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활동

##### **알바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서빙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서빙이 사실 힘들어요. 컴플레인 막는 것도 힘들고 손님들 화를 받아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매장의 매출을 높이려면 서버가 중요하거든요. 서버가 잘 웃고 손님한테 잘 대해야 이게 계속 소문을 타고 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서빙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 그래서 저는 무조건 웃거든요 아무리 진상이라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님들이 아가씨 보러 더 올 게, 언니 보러 더 올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저도 즐겁고. 힘든 날도 있지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해왔고 익숙하기도 하고.

23세. 여. 패밀리레스토랑 직원

#### 2. 사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 **힘든 일을 겪더라도 마음 맞는 또래들과 만나고 싶다.**

(조사자: 그렇게 매일 야근을 하는데 왜 계속 일하셨어요? 거기서)  
 거기 일은 정말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 또래가 많으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 옛날 친구들 말고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이 12시에 끝나도 놀아요. 놀고 나서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랬어요.

24세. 남. 음식점 근무

3. 생활 리듬. 규칙이 지켜질 수 있는 근거

**내 삶을 지탱해주는 활동**

(일터를 내가 일하는 곳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냥 ... 규칙? 항상 정해진 시간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오고 자는 시간도 항상 규칙적이고. 저를 제어해줄 수 있는 고정적인 일터가 있으니까. 제가 좀 흐트러지지 않게 제어가 되는 장점은 있거든요. 일을 안 해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낮밤이 바뀌었다가 낮에 잤다가 언젠는 밤에 잤다가 그리고 자는 시간도 절제가 안 되고. 12시간씩 자고 일어나서도 사이클이 없으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항상 쉬고 있으니까 해이해졌어요.

23세. 남. 의류매장 직원

4.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좋은 일이란? 배우는 게 있는 일. 편하다고 좋은 일은 아니다.**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칼질하는 거, 생선 손질하는 거를.

... 보안업체 그런 일은 배우거나 도움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에 했던 일도 철판볶음밥 만들 줄 알고 거기 메뉴들 다 만들 줄 알게 되고.

26세. 남. 백화점 수산물 판매장

5]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노동

1. 존중받는 일터

**잘못해도 욕하지 않는 일터**

잘못해도 욕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는 일터를 처음 봤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함께 밥 먹고, 끝나고도 집에 가서 먹을 밥을 챙겨주셨어요.

일하면서 사람대접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 사회적기업(음식점) 인턴십 참여 청소년

## 2.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곳

###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미를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일하던 곳에 입사를 해서 배웠을 때는 매니저님이 일하는 거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 후추는 왼쪽, 소금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 닿았거든요.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면 뭔가 뿌듯함이 있고 좀 더 서비스를 잘하고 싶어지는.

그런데 ○○매장으로 일을 옮겼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일을 하게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모르겠어서 ‘내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돈도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쁜 매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대충대충 일을 하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그냥 달라니까 주는 거고 그런 거에서 저는 좀 회의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다 배우는 게 없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21세. 여. 패밀리레스토랑 근무

## 3. 면접에서도 배워요

깜짝 놀랐던 게 면접을 한 시간 가까이했어요. 처음이었어요. “평상시 마인드가 어떠세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와서 처음의 약속이에요.” 이러면서 면접을 봐주시는데 시간 가는 걸 몰랐어요. 한 시간 가까이 면접을 봤어요. 보통 면접은 이러죠. 일해 봤어요? 얼마나 해봤어요. 얼마나 일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전화할게요. 끝이죠 보통. 그런데 여기는 정말 면접을 재미있게 봤어요.

23세. 여. 카페 근무

## 4. 배우고 싶은 어른의 모습. 상사, 사장님

스물한 살 때. 패밀리 레스토랑 비슷한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명절 때 되면 자기 선물 받은 거 배, 참치 다 나눠주고 보너스로 10만 원씩 다 따로 챙겨 주시고 무슨 특별한 날이면 생일이면 우리 다 같이 회식하고 그러고 저희 잘 챙겨주고 마감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고. 여기 다니면서 처음으로 4대 보험도 해봤고 근로계약서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셨어요.

사장님이 매일 출근하시고 주방에서 직접 일하셨는데, 사장님이 1년에 딱 두 번 쉬었어요. ○○○ 사건 때문에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는데, 사장님이 밖에서 돈을 벌어서 저희 월급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월급 한 번도 안 밀렸어요.

22세. 남.

## ⑥ 사회, 신앙인의 역할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알바 노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정한 노동 보장, 노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인식과 접근이 필요
- 급여를 인상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 이외에, ‘알바’를 통해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함

### 1. 일상의 노력

#### 1) 고용주 · 사업주로서의 노력 : 존중과 배움이 있는 일터 만들기

- 노동 권익에 대해 먼저 가르쳐주기
- 내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존중 문화 확산시키기

#### 2) 고객 · 이용자로서의 노력

-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청소년 알바 대하기
- 친절한 언어, 좋은 어른의 모습 보이기

### 2. 특별한 노력

#### 1) 인턴십, 일 경험의 기회 제공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직업 체험 · 인턴십 사업장으로 참여하기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 참여하기

#### 2) 오래 만나는 어른, 밥 사주는 어른

\* 청년은 모든 관계 맺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불편하거나 부당한 관계를 싫어할 뿐.

- 사소해 보이는 성취에 기꺼이 반응해주기
- 이상해 보이는 행동에도 인내해주기

#### 3. 전문가의 노력 : 노동인권 교육 · 상담

- 권리, 정보 전달을 넘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교육

## 어떤 청(소)년의 사무보조 인턴십

지혜(가명, 23세 여성)는 저녁마다 PC방에서 일해 생활하는 생계형 알바(아르바이트) 청년이다. 가족 없이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삶이기에, 지혜에게 그곳은 '알바'라기 보다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지혜는 늦은 오후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불안정한 알바를 겨우 이어갈 뿐,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걸 배워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고 해도 알겠다고 할 뿐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별다른 변화 없는 상담이 1년째 이어지면서, 뭐라도 시도해보도록 잠깐이라도 사무직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지자체가 청년 일 경험을 지원하는 **한 달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가칭) 제도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맡아줄 '착한 회사'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기초적인 문서작성 경험도 없는 청년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경험의 기회를 주고 조언을 해주는 순수한 회사를 찾아야 했다. 여러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사회적 기업 A에서 겨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혜가 한 달을 잘 견뎌낼까?' 하는 고민도 작지 않았다. 매일 오후 늦게까지 잠들어 있다가, 겨우 일어나 PC방 알바만 반복해 온 지혜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출근할 수는 있을까. 걱정했던 대로 첫 2주 동안, 지혜는 거의 매일 지각을 했다. 지각이 반복되고 무단결근이 발생했다. 지혜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니 인턴십을 중단하자는 회사를 설득해 겨우겨우 인턴십을 이어갔다.

어떻게든 한 달은 버텨보도록 하자는 마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지혜 출근시키기 프로젝트' 담당 선생님을 붙여서 매일 아침마다 지혜를 깨워 출근을 도왔다. 하지만 지혜가 아예 깊게 잠들어 버리는 날에는 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지혜가 갑자기 스스로 일어나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 일주일'을 계기로 지혜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인턴십 중단을 바라던 회사는, 생활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지혜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는지 인턴십을 4주 더 연장하자고 했다. 회사에서 지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말수가 늘어나고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모습도 보였다. 회사 직원들이 지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지혜는 회사에서 웃기 시작했다.

지혜는 왜, 어떻게 변화했을까. '기대하는 사람들'과 '소속감'이 그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아침마다 시간 맞춰 출근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혜는 자신의 익숙했던 '실패의 패턴'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회사가 지혜에게 보여주었을 때 지혜는 언제 그만뉘야 할지 모르는 그동안의 알바 노동과는 다른 '소속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노동'이란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일 수 있고, 소속감과 사회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일-기업들에서는 이런 일의 가치들이 철저히 배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회사도, 사람도 있다. 지금도 이런 따뜻한 회사들이, 이런 일 경험들이, 흔들리는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사회적 기업 A에서 지혜는 또 다른 지각생 인턴들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정현, '지혜의 사소한 인턴십', <아름다운 동행>, 2020/11/01

## 발 표 2

#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민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민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들어가며

이 발표의 목적은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은 일반적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전환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이 혹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한다.<sup>1)</sup>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은 성인이 되지 못한 연소근로자 청소년들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라 규정하는데,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 중에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특별한 보호는 주로 근로시간, 휴일근무, 위험직종 근로제한 등이다. 청소년들의 근로는 비공식적이고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여러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막내 노동자로서 갑질, 욕설,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위험이라기보다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위험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으므로 이러한 부담 처우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실제 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높은 부담 처우 경험률이 드러난다. 올해 5월 발표된 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면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39.7%였다(여성가족부, 2022). 이는 같은 조사에서 2015년 55.5%, 2018년 51.9%에 비해 점차 감소한 것이다.<sup>2)</sup>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은 일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전체 청소년들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13~18세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5.8%였던 것에 반해,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13~18세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4.5%였다.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봤을 가능성이 6배가량 더 높다. 부당 처우 경험률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언 등 인격 모독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6~18세에서 14.5%,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6~18세에서 15.2%였다. 이를 13~18세로 다시 계산하면 14.3%인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13~18세의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 경험률이 2.4%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 처우를 경험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sup>3)</sup> 반면,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공식적인 창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라는 응답은 48.2%였던 반면,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하였다(16~18세는 6.3%). 부당 처우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른 전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치로도 2명 중 1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부당 처우를 경험할 비율이 높았지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 공식적인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 현황 및 문제점

공공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권익 보호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두 가지 체계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는

- 
- 2) 서울시에서 2019년에 발표한 조사(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의 경험률은 50.7%였는데, 만13~15세는 8.6%, 만16~18세는 19.2%, 만19세~24세는 74.2%가 일을 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수치는 만9세부터 24세까지의 조사값을 평균 낸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연소근로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각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 3) 다만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의 형태로 조사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사되는 특성이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부정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꿈드림 센터가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센터에 대해 청소년 노동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1) 중앙정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하기 용이한 곳에 상주하여 답변해주거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들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 (1)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sup>4)</sup>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각 지역의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권익센터의 상담 후 지원체계를 보면, 청소년이 상담 신청을 하면 1차 상담이 이루어지고, 2차 상담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배정된다.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조정을 시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의 권익 보호를 진행한다.



\*출처: 황진구, 유민상(2018).

그림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후 지원체계

4)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http://www.youthlabor.co.kr))의 전화상담은 1644-3119, 온라인 상담은 [www.youthlabor.co.kr](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관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위탁의 특성상 전문적인 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규모와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 청소년 친화적 상담에서는 한계가 있는 점은 단점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진입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sup>5)</sup>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2011년 ‘#1388 청소년근로보호 상담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자 상담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개소하였고, 2022년 현재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해피워크 매니저’라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황진구, 유민상, 2018). 해피워크 매니저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부당 처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중재 상담 등을 실시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을 연계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근로보호센터의 상담실적은 지속해서 증가 중에 있다((17년) 16,786건 → (18년) 32,822건 → (19년) 50,009건).<sup>6)</sup>

5) 여성가족부(2022). 청소년 백서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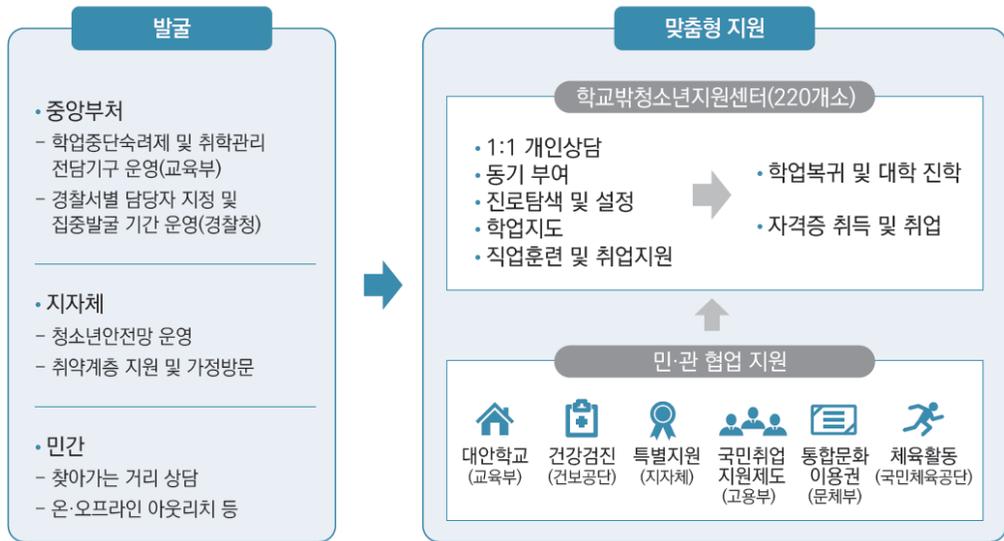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Sn=708088](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Sn=708088) 에서 2022년 10월 27일 인출.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꿈드림 센터

꿈드림 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2021년 현재 전국 22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꿈드림 센터는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22). 청소년 백서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꿈드림 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학업형 청소년과 직업형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학업형 청소년은 학습 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 강화 사업이나 진로 교육 활동, 직장 체험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등을 진행한다.

꿈드림 센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좋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매우 초기 모델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비해 광범위한 지원 역할을 맡고 있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학교 안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지원체계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인권 교육 및 서비스 연계 체계로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3.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 보호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과 부당 처우 경험률은 전체 청소년의 경험률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노동권익 보호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연결성(혹은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에서의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만 다루는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만 머무르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과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권익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청소년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노동보호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과거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군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여주시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주와 같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센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조례의 현실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근로 청소년’에서 ‘일하는 청소년’에 권익보호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체계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체계에 가깝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비공식적, 단기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배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체계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 2020).<sup>7)</sup> 이들은 애초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7)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개인 사업자로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매우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플랫폼 노동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많고,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범위도 기존 체계로 소화하기 힘들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고가 나서 한 달 넘게 일을 쉬어야 했으나 업체에서 리스비를 청소년에게 계속 부과시키는 경우, 오토바이를 반납했을 때 여러 부품의 수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도움도 필요로 한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던 때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 이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오토바이 일을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법·제도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배달 노동으로 진입하여 배달 플랫폼을 통한 노동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단지 배포하는 업무 정도인데, 이 일을 하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호텔 뷔페, 음식점 등의 연회장 아르바이트는 화려한 장소와 다르게 성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 등을 쉽게 당하는 공간이 된다. 앞서 이야기한 배달 업무는 지난 10년간 60명 이상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일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일자리들이 먼저 매칭되는데, 그곳에서 노동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다. 일이 필요한 혹은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근거법인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배건이,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른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꿈드림 센터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노동권익 관련 상담을 진행할 경우 바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4. 논의: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종교)의 역할

요컨대 중앙과 지방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남겨진 일자리들이 그리 좋은 일자리가 아닐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청소년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공에서의 청소년 인턴이든, 종교단체나 사회적 경제 같은 비영리 기관의 일자리든 청소년들이 괜찮은 어른들의 지도를 받으

며 일 경험을 하고, 다음 단계로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함께 교회 및 종교 단체가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일자리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므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함께 일하는 성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손님)에게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거나 “야”, “너”로 호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물었을 때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배달하는 청소년을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이라고 한다. 이들이 공부하지 않기 위해, 탈선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시선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그 증거가 노동이라는 시선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배건이(2021).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2021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22.05.18.). “학교 밖 청소년 84% ‘교통비 지원 희망’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2020). 청소년, 청년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진구, 유민상(202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 표 3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자리, 인턴십 프로젝트 사례 나눔

백승준 신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자리, 인턴십 프로젝트 사례 나눔

백승준 신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일하는 청소년”의 증가

최근 인구 변화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급격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평균 7.3%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통계청에서 발표한 만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7.0%에서 2020년에는 7.2%로 상승하였으며, 만 15~19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6.6%로 0.5%p가 상승하였음.

〈연도별 만 15~19세 경제활동 참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활동 참가율	7.0	7.6	7.7	7.7	8.5	8.8	8.8	9.2	8.2	8.3	7.2
고용률	6.1	6.8	7.0	6.9	7.7	7.8	8.0	8.4	7.4	7.6	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주로 재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문제 영역이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영역에 관한 정책은 거의 배제되어왔음.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일하는 청소년 노동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음.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의 지부인 ‘청소년유니온’이 2021년 한 달간 노동 경험이 있는 만 15~19세 청소년 10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조사하는 질문에서 80명(73.4%)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대답함.

코로나19로 본인 또는 일터 동료가 일터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45명)로 절반에 가까웠고 ‘청소년이라 먼저 해고됐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도 36명(33%)에 달함.

이처럼 청소년 노동자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청소년 노동자들은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열악한 근무조건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있음.

#### □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 이해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 등 몇 가지 의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직업 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음. 우리가 주로 일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사용하는 ‘알바생’이라는 말은 ‘아르바이트생’의 줄임말로 ‘아르바이트’는 <일>을, ‘생’은 <학생>을 뜻함(엄기호, 2015). 이러한 용어는 그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노동 현장에 있는 재학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됨(엄기호, 2015).

이렇듯 ‘아르바이트’를 본업 이외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학교 중단 이후 생계를 목적으로 일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을 ‘아르바이트’로 지칭하는 것은 학교 밖은 생생한 실존의 현장이며 주어진 부가적인 선택이 아닌 생계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김미옥, 2021).

학교중단 이후 노동시장에 뛰어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은 재학 청소년의 노동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존재함.

예를 들면 재학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방과 후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로 특정 시간만 일하지만,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 기능 없이 대부분 전일제 근로(full-time work)를 하는 실정임.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21.5시간으로 고교 재학생(18.5시간)보다 더 길었음.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월급은 49만 5,000원인데 반해 고교 재학생의 경우 58만 2,000원으로 8만 7,000원이나 차이를 보임. 아르바이트 급여는 대부분 시급 계산으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 단위 임금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김미옥,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시간 또한 1일 평균 6.98시간, 주당 4.23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일을 생계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엔 1일 8.16시간, 주당 4.55일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성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다르지 않아 사실상의 직업 노동자들임(윤철경, 김승경, 2019).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청소년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임금 차별 외에도 재학 청소년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불이익 비교 (재학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재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4.9%	61.1%
폭력, 부당해고 등 불이익 경험	21.0%	42.7%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8.7%	45.5%

\*출처: 안선영 등(2013), p.51, 표 II-21 전제.

이렇듯 노동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보호조치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재학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김종하, 2014).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십 프로젝트

2001년 세워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가 2012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2012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임.

주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학교 밖 배움터(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 연구, 홍보 및 대외협력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임.

- 학교 밖 배움터 지원 : 컨설팅, 간담회 및 재협약, 재정지원(교사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 교육연구 : 정책 동향, 대안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길잡이 교사 직무역량 강화, 대안교육기관 평가 및 가이드라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심포지엄
- 홍보 및 대외협력 :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회자원 네트워크 사업, 문화 예술관람 지원
- 맞춤형 지원 : 학업 지원비, 수업료, 멘토, 장학금, 상담 및 의료,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센터의 인턴십 프로젝트 사업의 성격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짐.

## ■ 인턴십 프로젝트 (2018년 이전)

### ○ 목적

<배움의 기회는 교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센터 인턴십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훈련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개별 관심사에 바탕을 둔 체험을 통해, 거꾸로 자기 진로와 대안교육기관 안에서의 학습과 학교 밖 현실 세계의 학습을 매끄럽게 통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 맥락 속에서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능력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인턴십 프로젝트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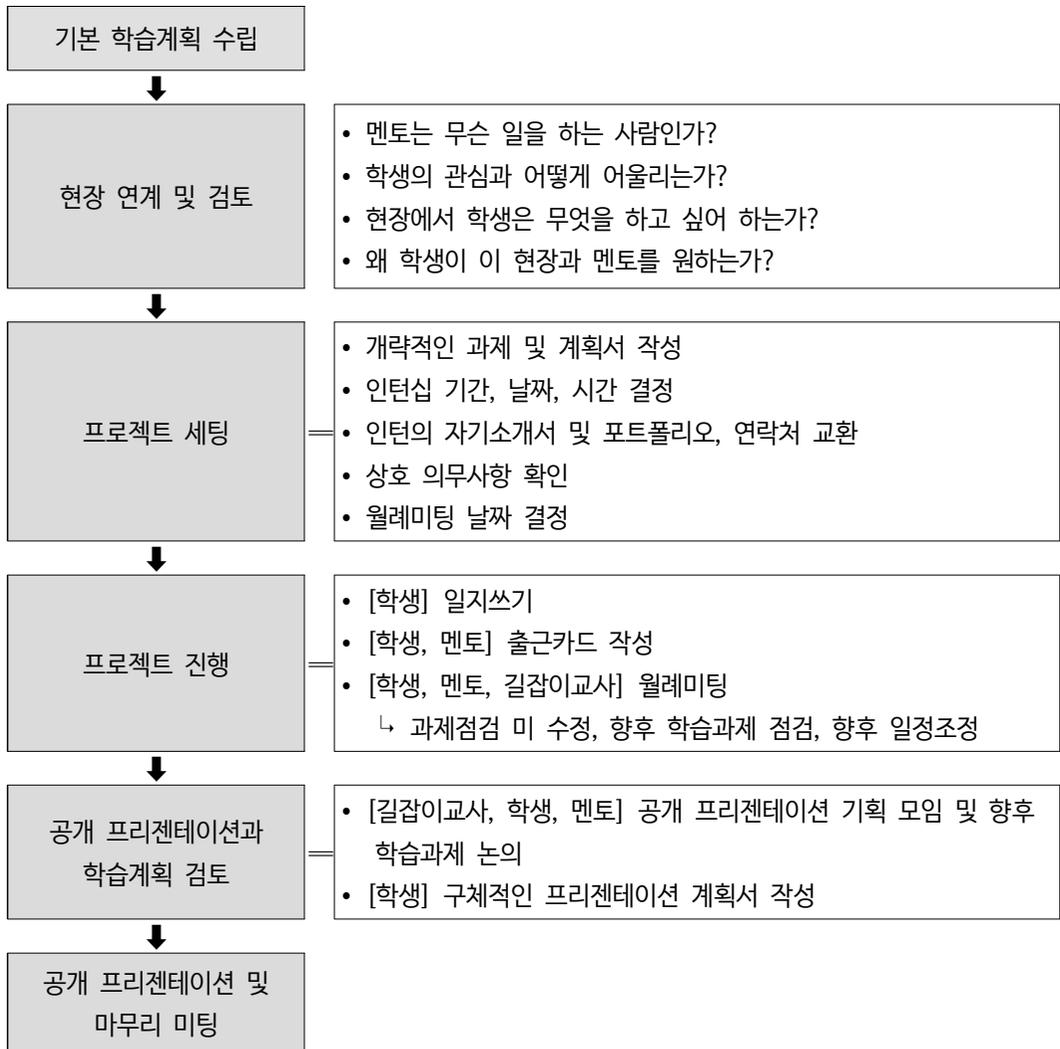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근거한 학습 목표(계획)를 세우고
- 이를 직업 현장에서 전문가인 멘토와 소통하면서,
- 현실 세계의 일(프로젝트)을 수행하면서 실현하는 것

※ 인턴의 중요한 3주체인 '인턴+멘토+길잡이교사'의 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안에서의 학습과 학교 밖 현실 세계의 학습을 통합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배움 과정

### ○ 인턴십 프로젝트 연혁

- 2001년 직업교육 기업 인턴십 연계 (삼보 인턴십 1명 취업)
- 2002년 서울시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인턴십 사업 최초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1인당 월 250천원 지원, 주 3일 이상(24시간), 3개월)
- 2005년 인턴십 프로젝트 (인턴, 멘토 및 교사)가이드 북 제작
- 2017년 인턴십 사업을 위한 대상자별 매뉴얼 개정
- 2018년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턴십 확대  
(서울시 보조금 지원 1인당 월 300천원 지원, 월 30시간, 3개월)

○ 인턴십 프로젝트 과정



■ 일자리 체험, 인턴십 프로젝트 (2018년 이후)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 경험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인턴

-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 인턴십 참가자 활동비 개별 지원 : 1개월(최소 30시간)×300,000원×3회=900,000원
- 인턴십 참가자 상해 발생 시 조치(영업배상책임보험) : 인턴십 활동기간 내 보장

○ 멘토

- 활동 약정서 작성 및 멘토비 지원
- 멘토 임명장 수여 (서울시장)
- 멘토 사업장 명패 수여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최근 3개년 진행 결과 요약

구분	년도	참가인원	현장배움터 (인턴십 기관)
1	2019	학교 밖 청소년 202명	총 79개소
2	2020	학교 밖 청소년 203명	총 76개소
3	2021	학교 밖 청소년 211명	총 92개소
평균		205명	82개소

○ 인턴십 발표회 : 우수 인턴십 활동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 분석 :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해당 분야 취업 정보 제공

**인턴십 사업장 멘토 간담회**

- 인턴 선발 시 진행되었던 면접은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합격한 이후 자신감이 향상되어 다른 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촉진제 역할이 됨
-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 일과 경험의 사회학습 과정으로 진행되는 인턴십 활동을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만큼 인턴십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센터를 통해 전달받은 간략한 정보를 통해 인턴십 참가자 이해 가능 및 소통 용이

**참가자 만족도 조사**

- 인턴십 참여가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평균 : 매우 그렇다 57%, 그렇다 42%)
- 다른 친구들 보다 사회를 더 빨리 경험해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현장에서 한 발짝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음
- 인턴십 참여 후 진로 목표 설정의 명확화, 동기 증진, 사회생활의 태도 습득이 가능해짐
- 진로 결정에 대한 도움이 되었고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음
- 일하고 싶지만 (사회에서)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청소년 인턴십 필요
- 믿을 수 있는 사업장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긍정

## 인턴십 결과발표회



### ○ 일자리 체험 및 인턴십 프로젝트 센터 자체 평가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된 직장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그들은 생계와 맞물려 있었기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취업임.
- 센터를 통해 연계된 인턴십 사업장이 갖는 장점인 안정성 등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요소로 작용하긴 하나 인턴십 활동 기간이 짧아 노동이 생업인 이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없음. 현실이 이렇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청소년을 선별하는 것은 유의미함.

- 기존의 인턴십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아르바이트)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노동의 주체자로서 노동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험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 종교(교회)의 역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일터, 다양한 현장 발굴 및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교회 차원에서 인턴십 자원의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연계 가능성 모색
- 민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직접 청소년 공공일자리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을 단순히 체험적인 의미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노동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을 노동자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논의 공론화 필요

#### 참고문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1).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연구」, 경기도
- 김미옥,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5). 「인턴십 프로젝트 가이드 북」, 서울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조혜영·박민경,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기호, (2015). 청소년과 노동. 「창비어린이」, 13(2), 19-31.
- 윤철경·김승경, (2019).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 서울: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동세미나자료집.
- 일하는 학교, (2015). 「생계형 청년알바의 ‘일’과 ‘삶’에 대한실태조사 보고서」, 성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유니온, (202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19속 2020년 청소년 노동실태보고서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첨부 : 인턴십 체험 동영상 2개

- 1) 김채린 : 로컬로 청소년관련 교육기획 스타트업회사 인턴십
- 2) 김나영 : 카페마인 바리스타 인턴십



